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서 산 군 수 귀하

### 서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증개정조례안

서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22조 제3호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조 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을 각각 “60”일로 한다.

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 5 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p> <p style="padding-left: 2em;">군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u>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p> <p style="padding-left: 2em;">(생 략)</p> <p style="padding-left: 2em;">1-2.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em;">3. <u>영 제9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u>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 5 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p> <p style="padding-left: 2em;">.....</p> <p style="padding-left: 2em;">.....</p> <p style="padding-left: 2em;">..... <u>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운영</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p> <p style="padding-left: 2em;">(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em;">1-2.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em;">3. <u>영 제95조 제2항</u> .....</p> <p style="padding-left: 2em;">.....</p> <p style="padding-left: 2em;">.....</p> <p style="padding-left: 2em;">.....</p> <p style="padding-left: 2em;">.....</p> <p style="padding-left: 2em;">.....</p>

현행	개정안
<p>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p> <p>(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가. (생략)</p> <p>나. (생략)</p> <p><u>(신설)</u></p> <p>3. (생략)</p> <p>가. (생략)</p> <p>나. <u>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u></p> <p>다. <u>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라. <u>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u></p> <p>마. <u>지하실(2층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u>(신설)</u></p>	<p>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p> <p>(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u>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다. <u>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u></p> <p>라. <u>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u></p> <p>마. <u>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바. <u>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u></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26조 (대부료의 납기) ① 균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다만,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u>30일</u>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u>30일</u>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u>30일</u> 이내</p> <p>① (생 략)</p> <p>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 략)</p> <p>1-2. (생 략)</p>	<p><u>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u></p> <p><u>각 5분의 1</u></p> <p>제26조 (대부료의 납기) ① -----</p> <p>-----</p> <p>-----</p> <p>-----</p> <p>----- <u>60일</u>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 <u>60일</u> -----</p> <p>-----</p> <p>----- <u>60일</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일 이전 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 을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